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3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0739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3349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접수 제5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21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접수 제52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7,786,161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27,586,160원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78,689,119원, 피고 E은 각 24,153,1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상속지분 각 1/5)이 있다.

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2016. 1.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관할등기소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제5222호	2015.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D
2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 19. 제2131호		
3	별지 제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4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5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제5223호	2015.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5.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E 피고 E
6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제5223호		
7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제5223호		

다. 망인의 예금채권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D는 2016. 1. 19.경 위 예금액을 모두 인출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금융거래종류	금액
1	지역농축협	보증	15,000,000원
2	지역농축협	출자금	6,874,878원
3	지역농축협	출자금	440,000원
4	휴면예금관리재단	예금	2,862원
5	지역농축협	자립예탁금	16,613,067원
	합계		38,930,807원

라.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한편, 망인은 2013. 1. 28.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만기/생존시 및 입원/진단/수술/장해시에는 망인, 사망시에는 피고 D로 하는 NH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는 망인의 사망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9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열람 및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조합원등재에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액 및 이 사건 보험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모인 망 G가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상속재산인 60,000,000원의 예금채권 중 일부인 9,000,000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 D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되, 원고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예금액을 피고 D가 수령하여 제반 세금과 상속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위 돈의 처분권도 피고 D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예금액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 D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10,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법무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열람 및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조합원등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 D의 말을 믿고, 피고 D에게 원고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들은 위 원고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 단독 소유로 하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사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 단독소유로 하되 원고들에게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D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4/5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E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4/5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각 1/5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 D가 원고들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 이 사건 예금액을 전액 인출한 사실,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금액 전부를 단독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으로 각 7,786,161원(= 38,930,807원 × 1/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예금액을 피고 D가 수령하여 제반 세금과 상속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돈의 처분권도 피고 D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D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위 돈의 처분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 D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금 중 각 1/5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나(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인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피고 D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모인 망 G가 사망하여 망 G의 상속재산인 60,000,000원의 예금채권 중 일부인 9,000,000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 D의 고유재산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의 미양농협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인 피고 D가 받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비로소 지급되고 그 금액 또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된 금원은 납입 보험료에 불과한 바 보험금과 납입 보험료가 등가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지급되는 보험금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접수 제5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21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접수 제52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7,786,161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2. 9. 선고 94다502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고, 이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중석 판사 장혜정 판사 최유빈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전 1283㎡

2. [토지] 경기도 안성군 J

경기도 안성군 J 답 3158㎡

3. [토지] 경기도 안성군 K

경기도 안성군 K 전 1398㎡

4. [토지] 경기도 안성군 L

경기도 안성군 L 답 2169㎡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답 3217㎡

2. [토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N

충남 천안시 서북구 N 답 1319㎡

3. [토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O

충남 천안시 서북구 O 답 1081㎡. 끝.